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4. 30.
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4월 9일

나. 발 의 자: 김지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지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정의를 규정하고,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“소상공인연합회 지회”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제4호~제5호(정의)에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근거하여 “소상공인연합회”와 “소상공인연합회 지회”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
  - 안 제4조의2제2항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)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.
  - 안 제4조의2제3항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)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.
- 검토 결과
  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본 조례는 영등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, 경영안정,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(2010.12.30.)된 바 있음.
  - 이번 일부개정은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, 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,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.
  - 한편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출은 상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기에 법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(支會)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.

- 또한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비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직접 교부하고,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게 규정하여 보조금 교부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보여짐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4. .

발 의 자: 김지연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정의를 규정하고,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
나.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
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상공인기본법」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4. 4.~ 4. 9.): 의견 없음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소상공인연합회”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
5. “소상공인연합회 지회”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.

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4조의2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소상공인연합회”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</u></p> <p>5. <u>“소상공인연합회 지회”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의2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</u></p>

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